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조현식 소유물건
(2025타경10419)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법보좌관 최규태

감정평가서번호: DY8-250326-3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두요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조삼제

(주)두요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지사장 박길훈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일억일천일백칠만오천원정(₩111,075,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법보좌관 최규태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매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조현식 (2025타경10419)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4.04	2025.04.04	2025.04.04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4정4단8무보 이	토지 하	44,430 여	2,500 백	111,075,000
	합계					₩111,075,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의 개요

1. 평가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에 소재하는 “탐거리마을”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평가에 관련된 법적근거 및 대상목록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평가대상 목록과 형상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하여는 평가명세표, 평가요항표, 위치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치 및 기준시점

1)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산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 기준시점: 2025년 04월 04일([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현장조사 완료일을 기준하였습니다.)

4. 평가방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되, 거래사례, 평가전례 등을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 ①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행하여 산정하는 “원가방식” ,
- ②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지목 ·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을 및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지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기준평가방식” ,
- ③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정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방식” ,
- ④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방식” 이 있습니다.

5. 평가방법의 적용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 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을, 생산자물가지수,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의 개별요인, 인근 보상선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였으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공시지가기준법 이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검토 및 조정은 생략하였습니다.

2) 그 밖의 사항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입목 등은 지역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II. 토지가격의 산출

1. 대상토지의 개요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비고
1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산223	임야	4정4단8무보	자연림	농림 지역	순수 산림지대	맹지	부정형 급경사	

2.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1) 표준지선정기준

-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② 평가대상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③ 평가대상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④ 평가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2) 표준지의 선정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 위치와 접근성, 비교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아래 표준지를 선정 하였습니다.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표준지공시지가 내역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5.01.01자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 위치의 근접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시기준일: 2025.01.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 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산225	임야	56,331	자연림	농림 지역	순수 산림지대	맹지	부정형 급경사	565	

3.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용도지역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발표한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산정하여 적용하되, 가격시점 당시에 당해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월의 지가변동률을 추정 적용하였습니다.

1) 대상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용도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	지가지수	비고
농림지역	2024.01.01~ 2025.04.04	0.279	1.00279	2025.01.01 ~ 2025.02.28 : 0.154 2025.02.01 ~ 2025.02.28 : 0.100 (1 + 0.00154) * (1 + 0.00100 * 35/28) ≒ 1.00279

4.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적제요인 대등합니다.

(지역요인 격차율 : 1.00)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5. 개별요인 비교

1) 임야지대의 조건별 비교항목

구 분		
조건	항목	세항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개별요인 비교

대상 토지 (기호)	표준지	개별요인비교						개별요인 비교치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1	가	-	1.00	1.12	-	1.00	1.00	1.120
본건 토지(1)는 표준지(가)와 대비 임도의 개설상태 및 인근취락과 거리 등 접근조건에서 대등하나, 일조, 경사, 방위 등 자연조건에서 우세함.								

6. 그 밖의 요인보정치의 결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등에 근거하여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지가변동에 미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수준과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가격격차를 보정하여 평가가액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보정이 필요합니다.

2) 관련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2항, 대법원판례[(01두3808(2003.02.28.)), 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1991.12.28.)] 등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산정방법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가액과 평가사례 또는 거래사례 기준 표준지가액과의 격차를 검토하여 산정하되 인근지역의 거래가능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text{그 밖의 요인} = \frac{\text{평가선례(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액}}{\text{표준지의 가격시점 현재가격}}$$

- 평가선례(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액 = 평가선례(거래사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 표준지의 가격시점 현재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4) 인근지역 평가선례 및 거래사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협회 KAPA HUB PLUS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거래금액 (평가금액) (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비고
1	감산리 산230	임야	농림지역	720	2022.03.30	취득처분	
2	감산리 산176-1	임야	농림지역	1,108	2023.10.24	거래사례	
3	우라리 산204	임야	농림지역	1,808	2024.06.03	거래사례	

5) 그 밖의 요인보정치의 결정

본건과 비교가능한 평가선례 및 거래사례의 지가수준과 최근 부동산 경기의 추세 및 전반적인 경기상황 등으로 보아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지가수준이 공시지가수준과 괴리되어 현실가격의 반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적절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7. 토지가격의 결정

상기 제요인 및 기타 가격 형성상의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토지가격을 아래 산식에 의거 결정하였습니다.

$$* \text{산식: 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치}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치} \\ \times \text{그 밖의 요인 비교치} = \text{토지가격(원/㎡)}$$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시산가격 (원/㎡)	평가가격 (원/㎡)	비고
1	565	1.00279	1.00	1.120	4.00	2,538	2,500	

III. 감정평가금액 결정

1. 감정평가금액

구분		면적(㎡)		감정평가액		비고
종별	일련 번호	공부	사정	단가	금액	
토지	1	4정4단8무보	44,430	2,500	111,075,000	
감정평가액 (합계)				₩111,075,000-		

2. 결정의견

상기 평가선례와 거래사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이를 평가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가(원/㎡)	금액(원)	
1.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산223	임야	농림지역	4정4단8무보	44,430	2,500	111,075,000	지상의 입목포함
합 계								₩111,075,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에 소재하는 "탑거리마을"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 일대는 임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산림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남측 원거리에 국도 및 취락지대가 위치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급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맹지상태 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추가기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2018.11.29).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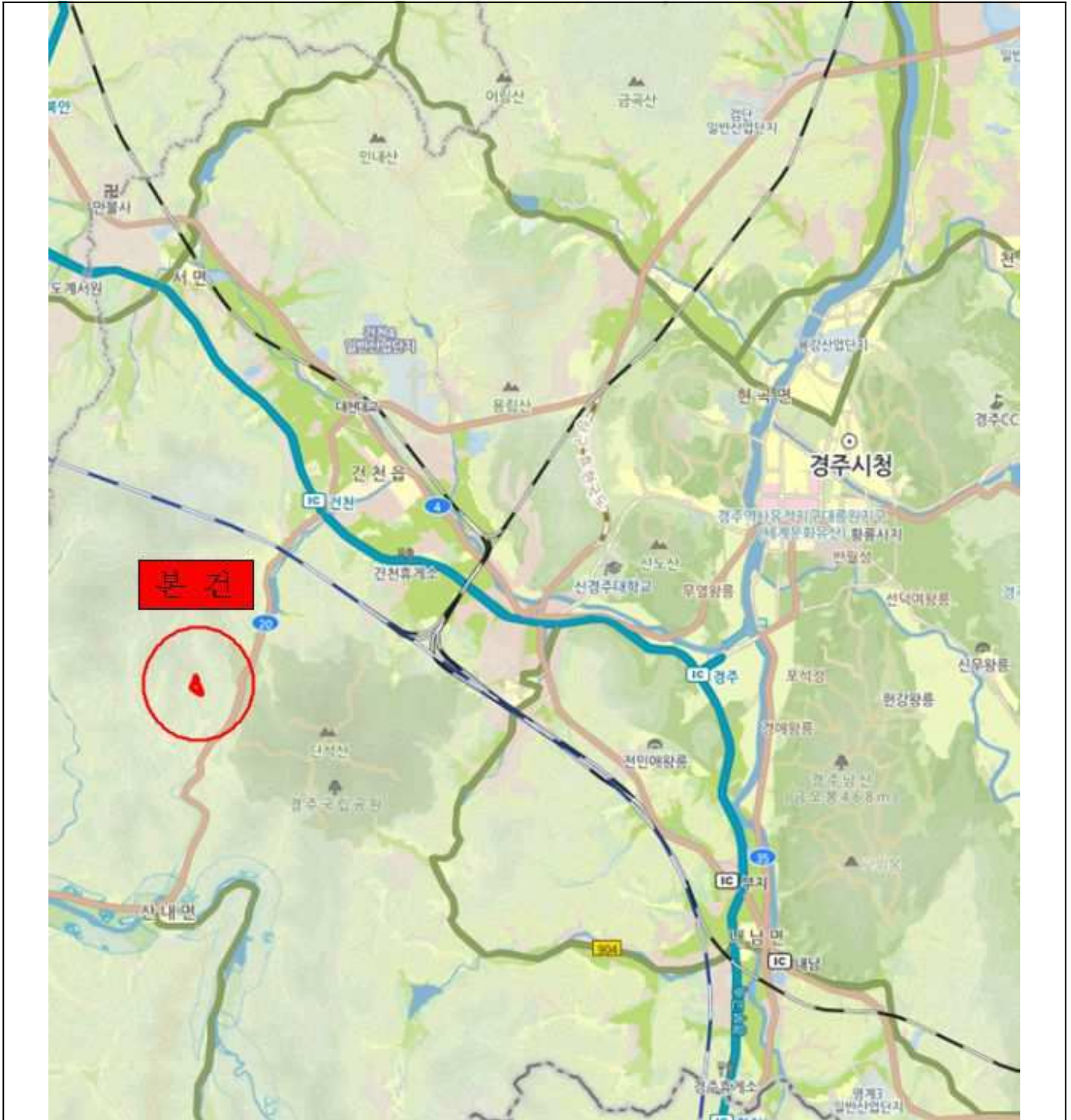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2) 기 타: 없습니다.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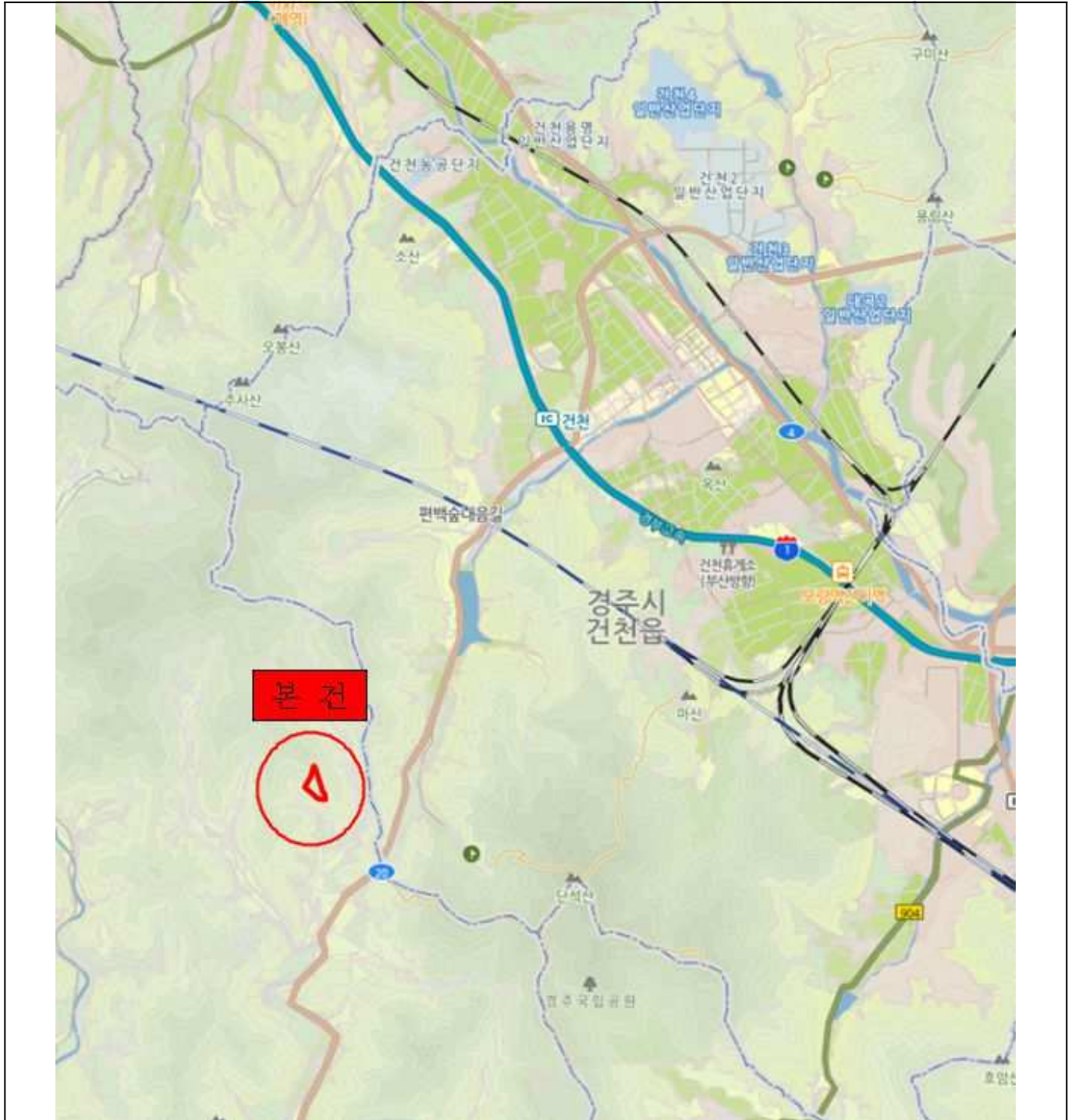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산223
-----	-----------------------



위치도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산223
-----	-----------------------



위치도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산223



위 치 도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산223



지 적 도

